

별첨2

계약직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 신규계약직 직급부여기준

구 분	자 격 기 준
<p>가급 (차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■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■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■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노무사, 기술사, 건축사, 경영지도사
<p>나급 (과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관분야에서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■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■ 상기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참여 실적이 있는 자
<p>다급 (대리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음